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9. 4 선고 2018가소1308042 판결 [입찰보증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 대한민국

피고 A

변론종결 2018. 9. 4.

판결선고 2018. 9. 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9,925,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7. 21.부터 2018. 7. 31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판사 김정태